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54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이달희 · 서천호 · 김예지
고동진 · 김상훈 · 최보운
강대식 · 임종득 · 김기현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

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
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
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그 외 교섭단체가 위원이 결원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는 날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위원을 추천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교섭단체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

제9조제2항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그 외 교섭단체가 이사가 결원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는 날 또는 이사의 임기만료일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이사를 추천한다.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교섭단체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또는 그 외 교섭단체가 위원이 결원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는 날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위원을 추천한다.</u>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교섭단체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② ~ ④ (생략)

2.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